

11. 地方自治法改正促求決議案

제안년월일 : 1992. 12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主 文

지방의회구성 3년제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회운영결과 나타난 현행 지방자치법 조항 중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취지에 이긋나는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중앙관계 요로에 개정촉구

2. 提案理由 및 骨子

(1) 제안이유

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.

(2) 주요골자

지방의회 의원이 직부로 인하여 傷甯을 입거나 사망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 (법 제32조의 2 신설)

②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하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와 상급지방자치단체사무(시·도사무)에 대하여 국회 및 시·도의회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 하도록 함.(법 제36조 제3, 4항 신설)

③ 지방의회에서의 증언·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. (법 제36조의 2 신설)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출석·답변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·답변하도록 함. (법 제37조 제2항 개정)

⑤ 지방자치단체의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. (법 제103조 제1항 개정, 현행 내무부 규칙에 의거)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. (법 제118조 제1항 개정, 현행 각각 40일전, 35일전)

⑦ 내무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을 삭제하도록 함. (법 제158조 삭제)

⑧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함. (법 제159조 제3항 개정)

3. 参考資料：현행 법과의 비교

現 行	改 正 案
(신 설)	<p>제32조의 2(상해·사망등의 보상) ①지 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(제53조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나 의상의 명에 의한 개회중의 공무여 행을 포함한다.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 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
제36조(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)	제36조(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)
①~② (생략)	①~② (현행과 같음)
(신 설)	<p>③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한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 무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한다.</p>
(신 설)	<p>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하는 국기시무 및 시·도의 사무에 대 하여 국회 및 시·도의회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 구의회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.</p>
<p>③제1항의 감시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⑤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現 行	改 正 案
(신 설)	
<p>제36조의2(지방의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) 지방의회에서의 안전심사 또는 사무의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,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제20조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제37조(사무감사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36조의2(지방의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) 지방의회에서의 안전심사 또는 사무의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,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제20조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제37조(사무감사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</p>
<p>③(생략)</p> <p>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~④(생략)</p>	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그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35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50일전</p> <p>..... 40일전</p> <p>.....</p>

現 行	改 正 案
<p>②~④(생략)</p> <p>제158조(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) 내무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·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.</p>	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8조 삭제</p>
<p>제159조(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)</p> <p>①, ②(생략)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사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.</p> <p>(신 설)</p>	<p>제159조(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)</p> <p>①,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12. 대구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 : 1992. 12

발 의 자 : 條例整備特別委員會 委員長

1. 提案理由

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의원들의 업무보조를 위해 사무처 직원외 외부의 전문가를 사부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의 전문성 제고 통한 행정감시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.

2. 主要骨子

○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행정사무보조자로 외부전문가 위촉활용